

# AI컴퓨터전자공학부 내규집

소관부서 : AI컴퓨터전자공학부

제정 2013. 00. 00.

개정 2017. 09. 21.

개정 2022. 03. 01.

개정 2026. 03. 04.

제1 조 (목적) 본 내규는 한동대학교 AI컴퓨터전자공학부(이하 "학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학부 회의)

- ① 학부 회의는 학부의 최고 의결기구로, 학부의 중요한 업무는 학부 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다.
- ② 학부 회의는 학부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 ③ 학부 회의는 학부 교수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는 안건은 학부 재적 전임 교수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교수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학부사무실은 학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제3 조 (학부사무실)

- ① 학부사무실은 학부의 대내외적 학사행정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학부장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② 학부사무실은 학부와 관련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 조 (교육과정의 편성 및 개편)

- ① (교육과정의 편성)
  1. 학부에는 다섯 개의 전공(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각 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매 학기 수강편람을 따른다.
  2.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은 공학교육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 ② (교육과정의 개편)
  1. 교과과정의 개편은 학부 회의의 의결 후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 교과과정의 개편안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PD 교수 또는 학부장이 학부 회의에 제출한다.

제5 조 (교육과정의 운영)

- ①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의 공통 교과목의 운영)
  1. 전자공학(전자공학심화) 전공과 컴퓨터공학(AI·컴퓨터공학심화) 전공의 양 분야에 공통으로 속하는 교과목의 주요 변경 사항은 학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2. 양 전공에 공통으로 속하는 설계 교과목의 학습성과, 강의목표, 강의계획서, 담당 교수의 결정은 학부장, PD 교수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정한다.
- ② (종합설계과목의 운영) 종합설계 과목들의 운영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종합설계 교과목 운영 세부 지침)을 따른다.
- ③ (Information Technology 과목과 컴퓨터공학 과목 간의 상호인정)
  1. ITP 코드로 수강한 과목은 학생이 Information Technology 전공을 컴퓨터공학 전공

또는 AI·컴퓨터공학심화 전공으로 변경할 때 동일 과목명의 ECE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ECE 과목의 전공 소속은, 해당 IT 과목을 이수한 해의 수강편람에 나타난 전공 교과목 표에 열거된 전공으로 인정된다.

2. 위의 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컴퓨터공학 전공의 ECE 코드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 시점에 Information Technology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 조 (학점인정)

##### ① 편입생, 교환학생, 전과생

1. 해당 학생이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학점인정 관리 세부 지침)을 따른다.
2. 해당 학생이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공학교육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7 조 (자유학기 및 현장실습)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자유학기 및 현장실습 운영 세부 지침)을 따른다.

제8 조 (특화 랩 운영) 특화 랩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특화 랩 운영 세부 지침)을 따른다.

#### 제9 조 (학생 지도)

##### ① (전공설명회) 학부는 매 학기에 전공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공 이수 및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를 한다.

##### ② (전공 지도교수의 배정 및 상담)

1. 학부는 매 학기에 학생의 제1전공에 따라 전공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2. 전공 지도교수는 학기별 1회 이상 담당 학생을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 조 (졸업사정)

##### ① 학부에서는 매 학기 졸업생 예정자들의 졸업 사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 ②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서 졸업 사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받아 학부의 졸업사정을 거쳐 교무처로 제출한다.

#### 제11 조 (정기적인 교육환경 및 교육 결과 평가)

##### ① AI컴퓨터전자공학부의 학부사무실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 학부장에게 보고한다.

1. 각 교원 별 업무량 파악(담당 강의 시수, 담당 행정업무, 참여 중인 TFT)
2.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및 평균 전공 학생 상담 건수
3.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및 진학 현황
4. 해당 학기 전공별 및 학부 전체 재학생의 전입 및 전출 상황

##### ② 학부장은 1항의 평가한 문서와 개별 전공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학부 회의를 거쳐서 학부의 교육환경 개선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교수 총원 등의 대학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구체적 평가 시기 및 분석 절차는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교육환경 관리 세부 지침)을 따른다.

제12 조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AI컴퓨터전자공학부 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AI컴퓨터전자공학부 세부지침(발전계획 개선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